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지방세법, 건설기계저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명시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

○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개정으로 기존에 「납세완납증명·징수유예증명·미(비)과세증명」으로 구분 개별 발급되던 증명을 「납세증명서」로 통합됨에 따라 수수료 명칭변경 및 삭제

-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과 「징수유예증명」을 「납세증명서」로 통합하여 명칭 변경

○ 부동산중개업법제37조의3 개정으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항목 신설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외 3종

○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제2조,제4조 개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 변경

- 「중기저당권설정등록 및 이전등록신청」을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 및 이전등록신청」으로 명칭변경 외 1종

3. 검토의견

이번에 개정 논의되고 있는 8종 중 4종은 신설이고, 4종은 명칭변경사항임. 그 개정사유는 수수료 징수의 근거법률인 상위법 즉 지방세법과 건설기계저당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명시된 수수료항목을 정비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수수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 특수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분을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비용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제128조 제1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있으며(제128조 제2항),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30조 제1항).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제1항)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제2항)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그 대상사무라 할 수 있겠으며, 동법 제130조에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한 것 역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따른 수수료만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에 따라 대상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고유사무의 경우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단체위임사무의 경우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으로 수수료 징수가 가능하며,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굳이 조례로 정하도록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밖에는 굳이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고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설된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와 명칭변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법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공인중개사), 중개업개설등록증 재교부,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 총 4종(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수수료는 동법 제37조의3 및 제8조 제4항에 의거 시·도 조례로 규정해야 함)으로서 이들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로서 이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과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수수료도 타구와 비교하여 과소·과중하지도 않는 적정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4종의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별표1중 기존에 납세완납증명·징수유예증명·미(비)과세증명으로 구분하여 개별 발급되던 증명을 납세증명서로 통합하여 수수료의 명칭을 변경 및 삭제하자는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의 개정에 따른 것이고, 중기저당권설정등록 및 이전등록신청을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 및 이전등록신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것은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한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에 따른 것임. 양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의 명칭이 변경되어 본조례에 명시된 수수료항목을 정비하자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수료 징수대상사무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된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시행령의 시행일은 2000년 1월 1일,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의 시행일은 1994년 1월 1일임),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그저 행자부의 표준안만 기다렸다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위민행정의 차원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적정시기에 개정하여 그 개정된 조례에 따라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합니다.